

『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근한 의원 외 8명

2.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2023년
~ 2026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월정수당 지급 기준 수정(안 제3조 및 별표1)

4. 검토의견

○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반영하
는 것으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5. 참고사항

○ 공무원 보수 인상률

- 19년:1.8% 20년:2.9%, 21년:0.9%, 22년:1.4%, 23년:1.7%예정

○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 : ' 22. 10. 21.(금) 09:00 3층 중회의실

- 위원 구성 : 10명이내(임기 1년)

- 교육계, 법조계, 언론계, 시민사회단체, 통리반장 혹은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

- 심의회 운영 :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월정수당 등 결정

* 근거 :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

○ 구미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(가나다순)

소 속	직 위	성 명
구미상공회의소	사무국장	김 달 호
법무법인 맑은뜻	변호사	김 승 진
구미YMCA	이사	류 제 신
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북지역본부구미지회	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장	박 재 이
구미시 이통장연합회	사무국장	박 진 운
구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(금오공과대학교)	위원(교수)	서 경 도
구미시 여성단체협의회	회장	신 경 은
경운대학교	교수	여 상 삼
구미시의정회	회원	연 규 섭
매일신문 서부지역본부	부국장	이 창 희